

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즉시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	전화번호(휴대전화)			
신고 내용	재참여일	년 월 일			
	유예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재참여 사유	[]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[]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전 유예 사유 해소		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천안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

유의사항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.